

대통령령 제 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, 제3항 및 제5항 후단 중 “연 100분의 24”를 각각 “연 10
0분의 20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 후단 중 “연 100분의 24”를 각각 “연 10
0분의 20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
에 따른 이자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
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이자율의 제한) ① 삭 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.	제5조(이자율의 제한) ② ----- ----- --- 연 100분의 20-----.
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.	③ ----- ----- ---- 연 100분의 20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 제8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, 연체금의 관리비용, 연체금액, 연체기간,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.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연 100분의 20-----.
제9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)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.	제9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연 100분의 20----- -----.
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	② -----

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.

③ (생략)

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.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.

---- 연 100분의 20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----- 연 100분의 20-----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가계금융과	
연 락 처	02-2100-2511